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세월호 사고 관련 인간존중 교육 강화 안내

2014. 5.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인성건강과]

세월호 사고 관련 인간존중 교육 강화 안내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I. 필요성

-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정서적인 충격 상태를 인간존중 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간존중 교육 강화
- 재난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신장으로 교육공동체의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 강화
- 국가의 존재와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강화

II. 목적

-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해소
- 학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중시하는 인간존중 교육 방안 마련 실행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안전의식 제고 강조
-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자치와 참여권 신장
- 재난 극복은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협력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음을 강조.



III. 관련 근거

1.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994호, 2013.8.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 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조례 3781호, 2013.7.12. 공포·시행]

제10조(안전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IV. 방침

1. 전북교육의 최우선시하는 가치가 ‘학생의 안전’이라는 인식 공유
2. 가정과 학교가 아이들의 삶의 울타리가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사랑과 유대감을 가지고 학생 지도
3. 사고의 비극이 일상생활과 활동에 스며들지 않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인간존중 교육 강화
4. 학생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및 예방 교육 실시
5. 민주시민으로서 자긍심 및 책임의식 교육 강화
6. 학생 스스로 위기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처 능력 증진
7.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및 신뢰감이 형성되는 학교문화 조성

V. 영역별 인간존중 교육 내용

순	영역	내 용
1	계기교육	<p>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전북학생인권조례 제10조(안전에 관한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p>※ 학급조회 및 종례 시간, 도덕 및 사회 시간 활용</p>

2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학교에서는 체험활동의 목적, 내용 및 안전 유무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 (사전준비 및 안전교육 철저) • 안전장비(구명동의 등) 사용법 및 비상탈출방법 등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학생의 구조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실시 •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사고처리 비상대책반 구성 및 운영 • 구조, 치료, 현황파악 및 사안보고, 사후처리 등을 위한 예행연습 등 안전사고 처리에 만전 •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상황제시 및 이에 따른 실제 연습을 통한 적응 능력 함양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학생과 함께 만드는 안전 매뉴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 함께 알아보기 • 안전에 관한 점검 매뉴얼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논의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보기 • 사전답사 시 제작된 매뉴얼로 점검해보고 이야기하기 </div>
3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및 유족에게 편지를 쓰고 마음으로 위로하기 • 심리적으로 불안한 친구가 있으면 함께 대화하고 도움주기 • 자치활동 시간에 학생회 단위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 토의하기 •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퍼트리지 않기 (SNS, 단체대화방, 블로그 등) • 현장체험학습 취소와 관련하여 학생 간 발생하는 견해 차이에 대한 배경 이해 및 의견 조정 •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스포츠 및 문화예술활동 실시

4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및 상호존중 의식 함양하는 생명 존중 교육 실시 (인권교육 강사단 활용) • 교육공동체의 자신 및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 생각해보기 •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의사 개선 및 자기결정 능력 함양
5	상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서적 불안정이 심하게 나타나는 학교 구성원 파악 • 학생 간,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격려해주기 • 학교, Wee센터, 지역사회 상담가와 연계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 또래 상담이나 또래 활동(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적극 실시
6	학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행사 국민의례 시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 실시 • 현장체험학습, 학교축제, 체육대회, 학생회 관련 행사 등에 학생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계획하고 해결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및 방법 구안
7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간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학교 상황에 맞는 학교안전 및 인간존중 학교문화 조성 • 학부모 초청 강의나 워크숍 시 학교안전교육 안내 • 관련 학교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마련



VI. 기대 효과

1. 세월호 여객선 사고로 인하여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불안 해소
2. 교육공동체의 안전의식 강화 및 예행연습을 통해 재난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3. 교육공동체의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감 형성
4. 교육공동체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